

# 알아두어야 할 가족법 상식

## ● 양자를 입양할 수 있는 사람은

성년에 달한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, 결혼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, 자식이 없거나 누구든지 양자를 입양할 수 있다.

## ● 입양의 방법은

입양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입양의 효력이 있다. 입양신고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와 성년자인 증인 두 명과 양자의 친부모가 서명 날인하여 양부모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신고하면 된다.

## ● 양자는 입양 후 성이 바뀌는가

양자로 가더라도 자녀의 성분이 양부의 성과 본으로 바뀌지 않는다.

이 때문에 친부모, 친자식 같은 감정이 생기기 어렵다.

따라서 양자는 양부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.

단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할 때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.

## ● 전 남편 자녀를 재혼한 남편 호적에 올릴 수 있는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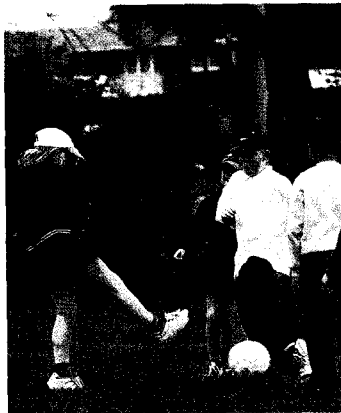
이혼하더라도 전 남편 자녀들이 호적을 옮겨올 수는 없고 다만 입양하면 호적에 올릴 수 있다.

## ● 양자나 양부가 일방적으로 한 입양신고는 무효이다. 입양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확정관

결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양자는 친가로 호적이 되돌아가게 한다.

## ● 부부 중 일방이 입양한 양자는

부부는 공동으로 양자를 입양해야 한다. 한쪽이 모르게 입양한 양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다. 또한 양자로 갈 때에도 서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

## ● 호주가 사망한 후에 입양할 수 있는가

호주가 자녀없이 사망했을 경우 아내, 어머니, 친족회가 사망한 호주를 위해 사후 양자를 들일 수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이를 폐지하여 사망한 후에는 입양할 수 없다.

한편 유언으로도 양자를 입양할 수 있었으나 이 규정도 폐지하여 자녀없이 사망한 호주를 위해 입양하

는 제도는 모두 없어졌다.

## ● 장남이 양자로 갈 수 있는가

호주의 장남이나 장손은 본가의 호주승계를 위해서만 양자로 갈 수 있을 뿐 다른 집에는 양자로 갈 수 없었으나 이를 폐지하여 장남이나 장손도 누구에게나 양자로 갈 수 있다.

## ● 입양되어도 친부모와 단절 안돼

양자를 가더라도 친부모와 자녀관계는 유지되며 친부모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고 부양의 의무도 있다.

-자료제공:한국가정법률상담소-